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 대상 확대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68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846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 대상 확대(안 제29조의3제1항 등) ..	3
나. 지역발전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29조의3제5항 신설)	10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846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2. 26.

다. 회 부 일 : 2025. 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하여 이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이전 시점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달리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기관에도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수립·시행 의무만 부과할 뿐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의

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5항 등).

3. 검토의견

가.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 대상 확대(안 제29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u>이전공공기관</u> 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u>이전공공기관</u> 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의3(<u>이전공공기관등의</u>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u>이전공공기관등</u> 은 <u>이전지역</u>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1. 2. (생략)	② ----- -----.
3. <u>혁신도시</u>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 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1. 2.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u>이전공공기관</u> ,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u>이전지역</u> ----- -----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u>이전공공기관</u>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u>이전공공기관등</u> ----- -----
③ <u>이전공공기관</u> 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	5. ----- <u>이전공공기관등</u> ----- -----
	③ <u>이전공공기관등</u> ----- ----- ----- -----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
④ <u>이전공공기관</u> 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④ <u>이전공공기관등</u> ----- ----- -----.

개정안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를 “이전공공기관”에서 “이전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¹⁾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149개 공공기관이 이전공공기관에 해당²⁾됨.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2)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109개 기관): 부산(13개), 대구(10개), 광주·전남(16개), 울산(9개), 강원(11개), 충북(11개), 전북(12개), 경북(10개), 경남(11개), 제주(6개)
- 세종시(19개 기관)
- 개별이전(21개 기관)

현행법 제29조의3³⁾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① 지역산업 육성, ② 지역인재 육성, ③ 지역주민 지원, ④ 유관기관 협력 등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지역발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149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6개 분야에 총 3조 1,408억원(3,647건)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임.

【 2024년도 공공기관 지역발전 추진 실적 】

(단위: 억원, 건)

분 야	주요 내용	사업비 (건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	9,632.5 (395)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분 야	주요 내용	사업비 (건수)
지역인재 채용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대상 2,462명 중 984명(채용비율 40.0%, '24년 목표 30% 초과달성)을 지역인재 채용	-
지역인재 육성	체험형 인턴 운영(한국남부발전(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 연구활동 참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생 홍보대사(국민연금공단) 등	742.9 (528)
지역주민 지원	생활 SOC 확충, 공공시설 개방, 봉사활동·물품후원 등	428 (1,068)
유관기관 협력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보유자산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기관간 포럼 및 협의체 운영 등	847.4 (533)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추진	17,764 (1,009)

주1)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현행법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주2) 그 밖의 사업: 1,993.4억원(114건)

※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2025. 4.)을 토대로 재구성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은 현행법이 제정·시행⁴⁾된 2007년 2월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이므로,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이미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이하 “기이전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2020년 5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이전공공기관에서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

4) 2007. 1.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7. 2. 12. 시행) →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개정(2018. 3. 27. 시행)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⁵⁾되어 한
국철도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21개 기이전 공공기관이 고시되었음.

하지만,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이전공공기관등으로 하여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644호, 시행 2020. 5. 27.]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
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⑥ (생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
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② ~ ⑦ (생략)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5호, 2020. 6. 3.,]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6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

금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이전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21개 기관 중 대전광역시 소재 16개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2개 기관, 충청남도·충청북도·부산광역시 소재 각 1개 기관 등임.

【 지역인재 채용 대상 기이전 공공기관 소재지 현황 】

지역	기관명	
대전 (16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종(2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충남(1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1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1개)	기술보증기금	

※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대전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가 2020년 10월에 충청남도와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음.

하지만,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따르는 경우 대전·충남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① 기이전 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은 이전배경이 다르고, ②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⁶⁾,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⁷⁾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이전 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나. 지역발전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29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 ④ (생략) <신설>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이전공공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지방시대위원회⁸⁾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이전공공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9조의3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행하고,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에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 의무만 부과하고 지역발전 추진실적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지역발전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입법임.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에 유사 입법¹⁰⁾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인체계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부족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과 아울러 2024년도부터 전년도 지역발전계획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이전공공기관에 포상¹¹⁾을 시행하는 등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 추진실적은 이전공공기관의 고유사업이 아니므로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90

11) '2023 지역발전계획 우수사례'로 9개 기관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2024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창 시상